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17,135,557	51,514,067
일반회계		1,401,450,796	42,043,524
특별회계		315,684,761	9,470,543
	공기업특별회계	296,587,861	8,897,63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371,379	1,271,1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977,303	1,859,31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2,239,179	5,767,175
	기타특별회계	19,096,900	572,9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5,277	9,75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176,671	185,3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64,176	121,925
	수질개선특별회계	7,407,622	222,2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123,154	33,69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32,07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